## 「폐기물관리법」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「폐기물관리법」제8조제1항(폐기물의 투기금지 등)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「폐기물관리법」제49조(대집행) 및 「행정대집행법」제3조(대집행의 절차)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, 의류수거함 소유·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4년 4월 30일

양주시장

- 1. 제 목: 「폐기물관리법」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- 2. 근거법규
  - 가. 「폐기물관리법」제8조제1항
  - 나.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
- 3. 처분대상: 붙임 참고
- 4. 공고기간: 2024. 4. 30. ~ 2024. 5. 20.
- 5. 공고내용
  - 가. **공고기간 내 자진철거**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한까지 **이행하지 않을** 경우 「폐기물관리법」제49조에 따라 **행정대집행을 실시함**을 알려 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나. 행정대집행은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집행하고 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귀하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.
  - 다. 행정대집행을 원치 않거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<u>2024. 5.</u> **20.까지** 양주시청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으로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.
  - 라. 「행정소송법」제20조 및 「행정심판법」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6. 문 의 처: 양주시 청소행정과(☎031-8082-6904)

## [붙임1] 공고대상

연번	소유자	위치	위반내용	용도	행위연도	비고
1	미상	광적면 삼일로 65번길 105	폐기물 무단투기	의류수거함	미상	-
2	미상	백석읍 꿈나무로 39-6	폐기물 무단투기	의류수거함	미상	-

## [붙임2] 사진대지





광적면 삼일로 65번길 105





백석읍 꿈나무로 39-6